

# 대학생협 발표자료

배양한 회계사

이산회계법인

# CONTENTS

I. 부가가치세

II. 퇴직연금 제도

III.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IV. 연말정산

## 1. 부가가치세란

-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3.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5. 세액계산의 흐름 - 일반사업자

<b>가. 매출세액</b>	가 = (1) + (2) + (3) ± (4)	<b>라. 경감-공제세액</b>	라 = (9) + (10)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3) 예정신고 누락분		<b>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b>	마
(4) 대손세액 가감		<b>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b>	바
<b>나. 매입세액</b>	나 = (5) + (6) + (7) - (8)	<b>사. 예정고지세액</b>	사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b>아.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b>	아
(6) 예정신고 누락분		<b>자.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b>	자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b>차.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b>	차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b>카. 가산세액</b>	카
<b>다. 납부(환급)세액</b>	다 = 가 - 나	<b>*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b>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5. 세액계산의 흐름 - 일반사업자, 계속

<b>가. 매출세액</b>	$가 = (1) + (2) + (3) \pm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b>나. 매입세액</b>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b>다. 납부(환급)세액</b>	$다 = 가 - 나$

## 6.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li> </ul>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li> </ul>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li> </ul>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li> <li>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li> <li>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li> <li>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li> <li>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li> <li>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li> <li>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li> </ul>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li> <li>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li> </ul>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 반과세자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li> <li>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li> </ul>

## 7.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10%)를 올바르게 부담했고 세금계산서까지 철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예외적인 이유로 인해 이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지 않는(환급해주지 않는) 항목**

###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의 유지·운영과 관계없이 대표자 개인의 가사 비용이나 취미 생활,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유지 비용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 SUV, 제네시스 등의 세단 (렌트, 리스, 유류비, 수리비 모두 불공)

**공제 가능 (예외):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9인승 등), 화물차(포터, 밴 차량) 업무용 사용 시**

###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지출

거래처 접대, 선물 구입, 거래처 경조사 화환, 거래처 직원들과의 골프 및 식사 등 **업무상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불공제**

### ④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예: 학원, 병원, 서점)는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 비용의 부가세도 동일

### ⑤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및 미등록 발급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등)이 잘못 적혔거나 누락된 경우

## 7.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

면세(Tax Exemption)는 국가가 정책적 목적이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특정한 재화, 용역 또는 거래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품목:** 쌀·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미용 목적 성형 제외), 교육 용역, 도서·신문, 금융·보험, 주택 임대
- **특징:**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은 저렴해지지만, 물건을 만들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생협이 학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 적용 (학생대상, 교수 및 외부인 과세)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 농산물을 사왔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낸 것으로 인정해서 빼줄게"라는 특혜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 **공제 요건**
  - 원재료:** 가공되지 않은 면세 농·축·수·임산물이어야 합니다.
  - 결과물:**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이나 용역(음식 등)을 팔아야 합니다.

쌀을 1,000만 원어치 샀는데 식당 총매출 중 교직원 매출 비중이 30%라면, 쌀값의 30%(300만 원)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법인(생협)의 음식점업 공제율(보통 6/106)만큼 매입세액으로 인정)

## 8. 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 1. 매출 및 매입 자료

[매출] 음식 판매 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가격)

[과세 매입] 주류 및 음료수 매입액: **22,000,000원** (부가세 포함 가격)

[면세 매입] 쌀, 고기, 야채 등 식자재 매입액 (계산서 수취): **53,000,000원**

[기타] 법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6/106을 적용하며, 한도 초과 등 기타 고려사항은 없다고 가정함.

###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 ① 매출세액 계산

음식 판매는 10% 과세 매출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공급가액: 공급가액 1.1억원 >> 매출 1억원, 부가세 0.1억원

#### ② 일반 과세 매입세액 계산

주류 및 음료수는 과세 매입이므로 낸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공급가액: 22,000,000원 >> 매입 20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

#### ③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면세 식자재)

면세로 산 식자재 가격(53,000,000원)에 공제율 6/106을 곱합니다.

**의제매입세액 = 53,000,000원 \* 6/106 = 3,000,000원**

#### ④ 최종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일반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 10,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5,000,000원

## 8. 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 1. 매출 및 매입 자료

과세 매출 (라면, 과자, 딸기우유, 구운계란 등): 60,000,000원  
면세 매출 (복권, 증량제봉투, 흰우유, 생달걀 등): 40,000,000원  
총 매출액: 100,000,000원 (면세 비율 = 40%)

과세 상품 매입 (과세 상품 공급가액 30,000,000원의 10%): 30,000,000원  
공통 매입세액 (매장 임차료): 매장 임차료로 지급한 공급가액 10,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1,000,000원

###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계산 >> 매출세액 600만원

② 과세 상품 매입세액 >> 매입세액 300만원

③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임차료 부가세)

임차료 부가세(1,000,000원)는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기여한 경비입니다. 면세 매출 비율만큼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100만원 중 60%(과세)만 매입세액공제됨. 60만원

④ 최종 납부세액 계산

총 공제 매입세액 = 과세 상품 매입세액(3,000,000원) + 공제 가능 공통매입세액(600,000원) = 3,600,000원  
납부세액 = 매출세액(6,000,000원) - 총 공제 매입세액(3,600,000원) = 2,400,000원

# CONTENTS

I. 부가가치세

II. 퇴직연금 제도

III.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IV. 연말정산

## 1. 퇴직연금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금융기관(외부)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회사는 매년 또는 매월 법정 퇴직금 상당액을 근로자의 개인 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납입된 돈을 펀드나 예금 등으로 운영하여 수익 및 손실 모두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퇴직연금 제도.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	퇴직급여-비용 xxx	현금 xxx
그외 없음		

###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법정 퇴직금으로 이미 확정. 회사는 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자금을 적립하여 직접 운영. 투자 수익 및 손실 모두 회사의 책임.

구분	차변	대변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현금 xxx
기말결산	퇴직급여-비용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수익발생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운영수익 xxx
실제퇴직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2.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및 세무조정

구분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운영 주체	근로자 개인	기업 (회사)
최종 퇴직급여	변동 가능 (운영 성과에 따름)	확정 고정 (퇴직 시점 급여 기준)
재무상태표 표시	없음 (납부 시 비용 처리로 종료)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표시
적합한 기업/직원	연봉제, 임금상승률이 낮은 기업, 이직이 잦은 근로자	호봉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많은 기업
세무조정	세무조정 필요 없음.	외부기관에 예치시 정상적으로 비용 인정 외부기관에 미예치시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 CONTENTS

- I. 부가가치세
- II. 퇴직연금 제도
- III.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 IV. 연말정산

## 1. 출자배당 개념 및 회계처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은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출자금'을 자본의 기초로 삼아 운영됩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생협도 한 해 동안 운영을 잘해서 당기순이익(잉여금)이 남으면 조합원들에게 이를 돌려주는데, 이를 **출자배당**이라고 합니다.

### ➤ 배당 한도 제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 원칙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

### ➤ 이용고배당

생협은 출자액 기준의 '출자배당' 외에, 조합원이 매장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에 따라 돌려주는 '이용고배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해 보통 이용고배당을 더 권장합니다.)

현금 지급 회계처리	차변		대변	
총회 - 배당확정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미지급배당금	XXX
배당금 지급일	미지급배당금	XXX	보통예금 예수금(15.4%)	XXX XXX
세금납부일	예수금(15.4%)	XXX	보통예금	XXX

## 2. 이용고배당의 개념 및 회계처리

이용고배당은 "조합의 매장(식당, 카페, 매점 등)을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가"에 따라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이용고배당 현금 지급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대상)
- 이용고배당 포인트로 지급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대상)

포인트 지급 회계처리	차변		대변	
총회 - 포인트 금액 확정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미지급배당금	XXX
포인트 이체일	미지급배당금	XXX	포인트충당부채 예수금(15.4%)	XXX XXX
포인트사용일	포인트충당부채	XXX	매출에누리 부가세예수금	XXX XXX

### 3. 규정 - 이용고배당 - 신용협동조합 기준

대상조합	당해연도 이익이 발생한 조합만 이용고 배당을 시행한다.	
배당한도	이용고 배당금은 출자배당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대상조합원	연말 출자 1좌 이상 보유한 조합원으로 2년간 거래실적이 없으면 제외	
산출항목	수신	예금의 평균 잔액
	여신	대출금의 수입이자 금액
	공제	수납 공제료
	비이자수익	사용금액 또는 사용건수
이용고배당 계산 순서	이용고배당 산출항목 선정 -> 조합원별 이용실적 계산 -> 조합원별 이용배점 계산 -> 조합원별 이용점수 계산 -> 1점당 이용고 배당금 계산 -> 이용고 배당금 지급	

#### 4. 배당소득의 지급 방법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배당소득	설명
원천징수시기	원칙 : 배당을 결정한 달 기준으로 원천징수(즉시 지급) 특례 : 결정 후 3개월 이내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5.4% 원천징수 - 현금배당의 경우
소액부징수	배당금액이 7,14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금액이 1,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의무 없음.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5. 기타 문의 사항

- 직원 개인ID로 법인카드 구매할 경우 포인트 적립에 관한 문제

### 1. 법인의 이익 누락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한 포인트는 법인의 자산이자 수익(잡이익)입니다.

이를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적립해 소비한다면, 법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경제적 이익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됩니다.

### 2.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 문제 (소득세법 위반)

회사의 자산(포인트)을 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세법상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현물상여)'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누적된 포인트 금액이 크다면 세무상 적발 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방안 : 회사 명의의 법인 계정 개설

네이버페이, 쿠팡, 대형마트 등 구매가 잦은 사이트에는 **회사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 회원 계정**을 개설합니다.

모든 포인트는 해당 법인 계정에 적립되도록 일원화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다른 비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결제' 처리하여 법인의 비용을 절감(잡이익 처리)합니다.

# CONTENTS

- I. 부가가치세
- II. 퇴직연금 제도
- III.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
- IV. 연말정산

##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단계	계산 과정 및 공식	설명 및 주요 공제 항목
1. 연간 총급여액 (예시, 5천만원, 1억원)	연간 총수령액 - 비과세 소득 (연봉 5,480만원-비과세 식대, 자녀수당 480만원)	근로자가 1년간 받은 전체 급여(상여금 포함)에서 식대(월 20만 원),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8995만원)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5천만원-1225만원)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3. 과세표준 (2705만원, 7725만원)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3775만원-총 1070만원) 본인: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자녀 300만원, 국민연금등 470만원) 그외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가능	<p>세금산정의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로, 이 금액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인당 150만 원)</li> <li>•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li> <li>•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li> <li>• 기타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li> </ul>

##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계속

단계	계산 과정 및 공식	설명 및 주요 공제 항목
4. 산출세액 (230만원, 1280만원)	과세표준 *세율 (2705만원 * 세율) 1400만원 - 6%, 50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억 - 35%, 이상 38~40%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해 이론상 내야 할 세금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5. 결정세액 (119만원, 1180만원)	산출세액 - 세액공제 (230만원 - 101만원) 근로세액공제 - 66만원 자녀세액공제 - 35만원	최종적으로 개인이 올해 내야 하는 진짜 세금(결정세액)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액감면</b>: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최대 90%) 등</li> <li>• <b>일반세액공제</b>: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li> <li>• <b>특별세액공제</b>: 보장성 보험료(12%), 의료비(15%), 교육비(15%), 기부금(15% 등)</li> <li>• <b>연금계좌</b>: 연금저축·IRP 납입액(12~15%)</li> </ul>

최종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만큼 추가 징수 (세금 폭탄)

## 2.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소득**은 세금(소득세)과 4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

항목	비과세 한도	주요 요건 및 비고
식대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금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	근로자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받는 금액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b>6세 이하</b>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 월 20만 원 한도)
출산지원금	한도 제한 없음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 기준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
연구보조비 / 활동비	월 20만 원 이하	학교 교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금액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2026년 변경

### 3.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실제 경비'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구분 (종류)	총급여액 기준 구간	공제 금액 계산 공식	한도 및 비고
1구간 (저소득)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소득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
2구간 (중저소득)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 * 40%)	-
3구간 (중소득)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 * 15%)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속하는 구간
4구간 (중고소득)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 * 5%)	급여가 오를수록 공제율이 5%로 감소
5구간 (고소득)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	최대 공제 한도 2,000만 원 적용 구간

총 급여액이 3.6억원이면 최대공제한도 20백만원 적용

## 4.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필수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

카테고리	세부 공제 항목	공제 내용 및 주요 한도	비고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필수
1.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인당 100만 원), 장애인(인당 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때 보너스로 적용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 부담금 전액 (100%)	직장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어 정산되므로 별도 증빙 불필요

## 4. 소득공제, 계속

소득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필수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

카테고리	세부 공제 항목	공제 내용 및 주요 한도	비고
3.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본인 부담금 <b>전액 (100%)</b>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전액 소득에서 차감
(주거 및 보험)	주택자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한도 400만원)</li> <li>•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최대 600만 ~ 2,000만원)</li> </ul>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제
4. 그 밖의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b>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부터</b> 공제 시작 (한도 있음)
(소비 및 저축)	기타 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저축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제

## 5.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제고와 특정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

카테고리	세부 공제 항목	공제율 및 한도	비고
기본 공제 (자동 반영)	근로소득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출세액 기준 법정 공식 적용</li> <li>총급여에 따라 <b>최대 50만 ~ 74만 원 한도</b></li> </ul>	별도 신청 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감
가족 관련 (인적 지원)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세 이상 자녀: 1명 15만, 2명 20만, 3명 이상은 초과 인당 30만 원 추가</li> <li>출산·입양: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원</li> </ul>	2026년 이후 세법 개정안 추진 동향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특별세액공제 (필수 생활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b>12%</b> (연 한도 100만 원 /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 한도 15만원

## 5. 세액공제, 계속

세액공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제고와 특정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

카테고리	세부 공제 항목	공제율 및 한도	비고
특별세액공제 (필수 생활비)	의료비	총급여액의 <b>3% 초과 지출분의 15%</b>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이상아 20%)	나이·소득 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도 합산 공제 가능
특별세액공제 (필수 생활비)	교육비	지출액의 <b>15%</b> • 취학전·초·중·고: 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인당 연 900만 원 한도	<b>미취학 자녀의 학원비·태권도장 비용은</b> 공제되나, 초등학생 이후 학원비는 제외됨
특별세액공제 (필수 생활비)	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b>15%</b> • 1,000만 원 초과분: <b>30%</b>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 <b>100% 전액</b> 세액공제(환급)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공제 가능 - 2026년 변경

## 5. 세액공제, 계속

세액공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제고와 특정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제도

카테고리	세부 공제 항목	공제율 및 한도	비고
금융·자산 (연금 및 주거)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500만 이하: <b>15%</b></li> <li>• 총급여 5,500만 초과: <b>12%</b></li> </ul> (연 통합 한도 900만 원)	연봉 5,500만 원 초과 근로자가 9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세금 <b>108만 원</b> 이 즉시 차감되는 최고의 절세 방법
금융·자산 (연금 및 주거)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 5,500만 이하: <b>17% (170만원)</b></li> <li>• 총급여 5,500만 초과: <b>15% (150만원)</b></li> </ul> (연 월세 한도 1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가능

## 6. 주택 소유 및 거주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가 대출, 전세 대출, 주택청약 관련 소득공제 3건 및 월세 비용 관련 세액공제 1건 존재

구분	세부 공제 항목	공제율 및 한도	비고
전세 (대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세대주</li> <li>•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b>40%</b> 공제</li> <li>• 주택청약과 합산하여 <b>연 400만 원 한도</b></li> </ul>
자가 (대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li> <li>• 취득 당시 기준시가 <b>6억 원 이하</b> 주택,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선택</li> <li>• 이자 상환액 <b>전액</b> 공제 (<b>연 600만 ~ 2,000만 원 한도</b>)</li> </ul>
저축 (청약 납입)	④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공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b>7,000만 원 이하</b></li> <li>• 연간 납입 한도 <b>300만 원의 40%</b> 공제</li> <li>• <b>최대 120만 원</b> 공제 가능</li> </ul>
월세 (거주 중)	②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li> <li>•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li> <li>•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 (<b>연 1000만 원 한도</b>)</li> </ul>

## [참고] 사례별 결정세액 비교 분석

구분	기본가정	공제율 및 한도	결정세액
청년 무주택	월세 80만원 카드 연봉의 40% 사용	총 급여액 50백만원 (연말정산 무계획)	결정세액 약 250만원
		총 급여액 50백만원 (절세 목표)	결정세액 '0'원 (약 연봉 70백만원까지는 세금 '0'원 가능)
		총 급여액 100백만원 (절세 목표)	결정세액 960만원 (투자 고민 필요 - 집, 교육, 주식 등)
부부 2자녀	자가대출 5억원, 4% 카드 연봉의 40% 사용 보험료 월 10만원 교육비 연 300만원(2인)	총 급여액 50백만원 (연말정산 무계획)	결정세액 94만원
		총 급여액 100백만원 (연말정산 무계획)	결정세액 866만원 (보험 X, 교육비 X, 연금저축 X)
		총 급여액 100백만원 (절세 목표)	결정세액 322만원 (세금 절감 효과 큼)

### [참고] 사례별 결정세액 비교 분석

구분	청년	청년	청년	부부-2자녀	부부-2자녀	부부-2자녀
총급여액	5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0
근로소득공제	12,250,000	12,250,000	14,750,000	12,250,000	14,750,000	14,750,000
근로소득금액	37,750,000	37,750,000	85,250,000	37,750,000	85,250,000	85,250,000
소득공제 합계	7,325,000	8,525,000	12,020,000	17,825,000	22,520,000	36,520,000
기본공제	1,500,000	1,500,000	1,5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연금보험료공제	4,700,000	4,700,000	8,270,000	4,700,000	8,270,000	8,270,000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1,200,000	X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6,000,000	6,000,000	20,000,000
신용카드 사용 공제	1,125,000	1,125,000	2,250,000	1,125,000	2,250,000	2,250,000
과세표준	30,425,000	29,225,000	73,230,000	19,925,000	62,730,000	48,730,000
산출세액	3,303,750	3,123,750	11,815,200	1,728,750	9,295,200	6,049,500
세액공제 합계	790,000	3,992,000	2,200,000	790,000	630,000	2,83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790,000	790,000	630,000	790,000	630,000	630,000
보장성보험료		120,000	120,000			120,000
교육비공제						900,000
정치자금세액공제		100,000	100,000			100,000
월세 세액공제		1,632,000	X			
연금저축/IRP		1,350,000	1,350,000			1,080,000
결정세액	2,513,750	(868,250)	9,615,200	938,750	8,665,200	3,219,500

## 7. 투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 등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존재

카테고리	공제방법	공제율 및 한도	비고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납입 한도: 연 900만 원</li> <li>• 총급여 5,500만 이하: (최대 135만 원)</li> <li>• 총급여 5,500만 초과: (최대 108만 원)</li> </ul>	<p><b>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투자 세액공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900만 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li> </ul>
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투자 시): 3,000만원 이하 전액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분 30%</li> <li>• 벤처투자조합 등 일반 출자: 투자 금액의 10% 공제</li> </ul> <p>※ 공통 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p>	<p><b>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절세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경우 3,000만 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함.</li> </ul> <p>3년 이내 출자지분 거래 금지</p>

## 8. 연금저축, IRP, ISA, 국민성장펀드 비교 분석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퇴직연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민성장펀드 (정책펀드류)
계좌 성격	노후 대비 자발적 연금	노후 대비 퇴직금+연금	만능 자산형성 바구니	정책적 기업 성장 지원 펀드
가입 대상	제한 없음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만 19세 이상 (근로자 15세~)	상품별 요건 상이 (주로 청년/근로자)
연간 납입한도	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	연금계좌 합산 1,800만 원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상품별 상이 (보통 연 수백만 원 선)
주요 세제 혜택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연 최대 6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2% 또는 15%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한도)	<b>순이익 200만~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b>	납입액의 일정 비율 소득공제 또는 출시 조건별 세액 감면
투자 가능 자산	펀드, ETF 등 (위험자산 100% 가능)	펀드, ETF, 예금, 원리금보장형 등(위험자산 최대 70% 제한)	국내주식, 펀드, ETF, 채권, RP 등	해당 펀드 단일 상품 또는 지정 펀드
의무 유지 기간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b>3년 (일반형/서민형)</b>	상품 요건별 고정 (보통 3~5년)
중도 해지 불이익	세액공제분+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 (전체 해지 시 16.5%)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소멸 (일반 과세로 재계산)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소득세 추징

## [참고] 연금저축 활용방안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가입하며, 투자 대상의 제한이 적고 자유로운 운용이 강점

1.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600만원

### 2. 연말정산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600만원 납입 90만원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공제 (600만원 납입 72만원 공제)

### 3. 운영방법 및 투자상품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 등) 투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자산의 100%를 성장형 기술주 ETF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

### 4. 중도인출 및 해지

**언제든 부분 중도 인출이 가능.** 다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초과 납입한 원금은 페널티 없이 출금 가능)

### 5. 사후관리 및 만기 수령 방안

만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기간 5년을 넘기면 드디어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①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관리 (연 1,5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거나 16.5%의 높은 분리과세율을 적용

② 수령 기간은 길게,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참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방안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연금화하거나, 본인 돈을 추가 납입해 절세 혜택 발생

1.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추가분은 세액공제 300만원임

### 2. 연말정산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600만원 납입 90만원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공제 (600만원 납입 72만원 공제)

### 3. 운영방법 및 투자상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자산 안정성 중요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예적금, 채권형 ETF 등)

### 4. 중도인출 및 해지

법정 예외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빼려면 계좌 전체를 전액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분을 제외한 적립금과 수익에 대해 15%의 세금이 추징됨

### 5. 사후관리 및 만기 수령 방안

만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기간 5년을 넘기면 드디어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①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관리 (연 1,5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거나 16.5%의 높은  
분리과세율을 적용

② 수령 기간은 길게, 나이는 많을수록 유리

만 55세~69세: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③ 퇴직금 수령 시 '장기 수령' 혜택 활용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까지 감면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무려  
50%의 세금 감면

## [참고] ISA 활용방안

1.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20백만원, 총 1억원

### 2. 운영방법

신탁형 - 투자자 상품 지정(금융사 매수)

>> 특정 정기예금, 펀드

일임형 - 금융회사 위임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MP)에 자산 배분

중개형 - 투자자 상품선택 및 매수

>>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펀드, 채권

### 4. 중도해지 규정

**일반 중도해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시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15.4% 세율로 과세

### 3. 세재 효과

**손익통산 구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 산정

**비과세 혜택:**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에 포함 안됨.

### 5. 만기 후 사후 관리방안

① 3년 주기 해지 후 재가입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납입 한도(연 2,000만 원)와 비과세 한도가 완전히 초기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안됨, 주의)

②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환승 전략

ISA 만기 자금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연금계좌로 이체 시,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 시 추가로 세액공제 발생

## [참고] 수퍼 ISA 예정

1.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40백만원, 총 2억원 (기존 합산 3억원)

### 2. 운영방법

신탁형 - 투자자 상품 지정(금융사 매수)

>> 특정 정기예금, 펀드

일임형 - 금융회사 위임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MP)에 자산 배분

중개형 - 투자자 상품선택 및 매수

>> 국내 주식, 펀드, 채권, 국민성장펀드

### 4. 중도해지 규정

**일반 중도해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시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15.4% 세율로 과세

### 3. 세제 효과

#### ① 청년형 ISA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청년

**특급 혜택:** 기존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뿐만 아니라,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납입액의 약 10% 수준)' 혜택이 신설될 예정

#### ② 국민성장 ISA (일반형)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나이 제한 및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특급 혜택:** 청년형과 같은 소득공제는 없지만, 손익통산 후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기존 ISA(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보다 훨씬 크게 확대 (예상은 1000만원)

## [참고]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정부와 민간,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

1.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총 2억원

### 2. 운영방법

사모재간접형 공모펀드 - 개인이 직접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형 자산운용사(미래에셋, 삼성, KB자산운용 등)가  
중간에서 유망 기업을 선별해 대신 투자해 주는 구조

**주요 투자 대상:**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중심**

**정부의 후순위 손실 보강:** 구조적으로 일반 국민(선순위)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자금의 약 20%를  
후순위로 참여

### 3. 세제 효과

3년 이상 투자 시 직장인과 고소득자에게 강력한 절세 무기를 제공

① 파격적인 구간별 소득공제 (최대 1,800만 원)

3천만원 이하 - 40% 공제

5천만원 이하 - 추가 20% 공제

7천만원까지 - 추가 10% 공제 >> 최대 18백만원 공제

②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9.9%)

펀드 운용과정이나 만기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년간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4. 중도해지 및 환매

**중도 환매 불가:** 가입 후 원할 때 돈을 출금하는 **일반적인 중도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거래소 상장을 통한 매도:** 가입자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시장 매도 가능)

**세제 혜택 추징 위험:** 만약 가입 후 3년 이내에 거래소에서  
매도(양도)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혜택은  
모두 추징

# 감사합니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 401호

문의.상담 antla99@daum.net / T. 010-5065-3978

[www.esancpa.co.kr](http://www.esancpa.co.kr)